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8.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8.2조(내국민 대우)

나. 제8.3조(최혜국 대우)

다. 제8.4조(시장접근)

라. 제8.5조(현지주재)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8.6조(비합치 조치) 제2항에 따라 유보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8.6조(비합치 조치) 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 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4.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지주재(제8.5조)와 내국민 대우(제8.2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8.5조)와만 불합치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8.2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상 약속을 저해하지 않고,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방위산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법률 제18755호, 2022. 1. 11.)

방위사업법 제35조(법률 제18805호, 2022. 5. 4.)

3.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여 중요기술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66호, 2023. 1.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 18755호, 2022. 1. 1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35호, 2023. 7. 18.)

4.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제9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의 규정에 따라, 이민,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를 포함하여 자연인의 주재 또는 자연인의 그 밖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5. 분야

총포, 도검, 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의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 분야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 분야

국가 소유의 국가 전자/정보 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국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 분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훈련, 공익사업, 대중교통, 공공주택, 보건, 그리고 보육.

9.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가.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 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고 기재한다.

나.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

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 분야에 대하여는,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8.6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8.5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0.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또는

라. 철도운송

1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 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2. 분야

환경 서비스 – 음용수 처리 · 공급 서비스, 생활폐수 수집 · 처리 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 제외)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분야

원자력 에너지 – 핵연료의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 포함), 방사성동위원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4. 분야

에너지 서비스 – 송전 · 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송전 · 배전 및 전력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5. 분야

에너지 서비스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6.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농축산물, 식음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나. 곡물, 육류, 가금류, 곡분, 인삼, 홍삼, 비료에 대한 도매(수입 포함) 서비스, 그리고

다. 쌀, 인삼 및 홍삼에 대한 소매 서비스

17.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8.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카보타지 제외)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9. 분야

운송 서비스 – 내륙수상운송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내륙수상운송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0. 분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할 수 있는 차량 정수의 결정 및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한국 우정당국은 국내 및 국외 서신의 수집, 처리 및 배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에 대한 접근 및 그 운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기준의 조치

우편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병역법(법률 제19081호, 2022. 12. 13.)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 18755호, 2022. 1. 11.)

22.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방송 서비스에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3.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 포함)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 및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기준의 조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7조, 제9조, 제18조 및 제21조(법률 제18735호, 2022. 1.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32870호, 2022. 8. 16.)

24.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기준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

8. 8.)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5호, 2021. 6. 29.)

25.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9조(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0호, 2023. 4. 2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5호, 2021. 6. 29.)

26. 분야

사업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공급·관리·판매 및 임대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7. 분야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10장(금융서비스)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현행의 합법적 투자은행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8. 분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의 디지털 오디오나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할 때, 한국은 한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한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그 밖의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협정의 발효일에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기준의 조치

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9592호, 2023. 8. 8.)

29. 분야

사업서비스 –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0.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
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1. 분야

사업 서비스 – 농업 · 수렵 ·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 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농협 · 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 · 수렵 ·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2. 분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 포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 8.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33. 분야

교육 서비스 – 유아 · 초등 · 중등 · 고등 및 그 밖의 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유아 · 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 · 보건 관련 고등교육, 유아 · 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의료 및 보건 관련 성인 교육 서비스 외의 성인 교육 서비스 제외), 그리고 그 밖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4. 분야

사회 서비스 –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5. 분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6. 분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 8.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 8. 8.)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 8. 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592호, 2023. 8. 8.)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779호, 2019. 12. 10.)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587호, 2020. 12. 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18호, 2020. 6. 9.)

37. 분야

도박 및 베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 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 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여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기준의 조치

관광진흥법 제5조, 제21조 및 제28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법률 제19122호, 2022. 12. 27.)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0조(대통령령 제32863호, 2022. 8. 9.)

한국마사회법(법률 제19121호, 2022. 12. 2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경륜·경정법 제4조, 제19조 및 제24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및 제22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법률 제18773호, 2022. 1. 1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2670호, 2022. 6. 7.)

38. 분야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 · 승인 · 등록 · 협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 · 법무회사(로펌)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 상사연합 · 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에콰도르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에콰도르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에는 종사하지 않는다.

가. 법원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적 문서의 준비

나.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다.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한국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또는 이를 한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라. 한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투명성 목적으로,

가.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 실무에 종사했어야 하며,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 나.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해당 대표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외국법 자문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해당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5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한다.
- 다.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 내에서의 그러한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해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에콰도르의 관련 법에 따라 조직되고 에콰도르 내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에콰도르가 아닌 국가의 법무회사(로펌)의 지점, 현지 사무소,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유형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이 유보 항목의 목적상, 에콰도르 법무회사(로펌)란 에콰도르 법에 따라 조직되고 에콰도르 내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39.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공인회계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해야 한다. 그러한 외국공인회계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40.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그리고 제공 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세무사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해야 한다. 그러한 외국세무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41. 분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오직 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2. 분야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한국 선박의 운영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연안해상운송은 한국 선박을 위하여 유보된다.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간 해상운송을 포함한다. **한국 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 소유한 선박

나. 한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다.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라.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가 한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는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21.2조(필수적 안보)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43. 분야

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특수항공 서비스 및 항공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을 제외한 항공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부록 II-가

<p>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p>	
분야/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연구 및 개발 서비스:	
가.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나.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다. 학제 간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조사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광업 부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포장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가.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나. 여행 대행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컨벤션 대행 서비스 외의 컨벤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빌딩청소 서비스(CPC 874*, 다만, 87409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환경컨설팅 서비스 (CPC 9409*)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기타 - 게임 서비스(CPC 964**)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
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